

- 2021년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본인 등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14조 제6항에 의거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가 2021. 1. 1. ~ 2021. 12. 31.까지 시행한
업무전반의 관한 사항과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21년도 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1부

2022. 2. 21

감사(체육진흥과장) : 노 태 현

감사(명일회계사무소장) : 정 명 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장 귀하

2021년도 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① 사무 감사 총평

- 2021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코로나 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움직이는 체육활동 환경조성 및 전문체육 강화를 위한 전문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하였고, 비대면 재가 체육활동을 위한 영상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② 주요 성과

- ① 2020 도쿄 패럴림픽대회, 충남도 보치아 실업팀 금메달 획득
 - 최예진 선수(BC3 2인조) 금메달 / 대한민국 금메달 2개중 1개
- ②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6위 달성(역대 최고 성적)
 - 전문체육지도자(8명) 확대 배치 효과 및 실업팀[도천안홍성] 기여
- ③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 3위 달성
 - 직전대회 대비 1단계 상승 / 육상 종목 대회 6연패 기록
- ④ 전국최초, 장애인생활체육 스포츠클럽[3종목 20개 클럽 정기리그 개최]
 - 신규 역점사업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심·현장방문
 - 2021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시도 성과평가 6년 연속 A등급 달성【전국최초】 ※ 평가주체: 대한장애인체육회
- ⑤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고객만족도 전년대비 3점 상승
 - 2020년 88.8점 ⇨ 2021년 91.8점
- ⑥ 수혜확대를 위한 후원금 65,000천원 확보
 - 코로나19로 기업 운영이 열악함에도 지속적인 관계형성 노력

③ 2021년 세입·세출 결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세입결산액(b)	세출결산액(c)	잔액(이월금)(b-c)
일반회계	6,640,716,000	6,619,834,671	5,726,215,761	893,618,910

○ 세입 결산

(단위 : 원)

일반회계	예산액(a)	세입결산액(b)	증감(b-a)
계	6,640,716,000	6,619,834,671	△20,881,329
경상적 세외수입	700,000	1,929,431	1,229,431
임시적 세외수입	240,800,000	218,532,824	△22,267,176
국고보조금	1,197,180,000	1,198,236,000	1,056,000
도비보조금	3,978,487,000	3,979,543,000	1,056,000
보전수입	1,223,549,000	1,221,593,416	△1,955,584

○ 세출 결산

(단위 : 원)

일반회계	예산액(a)	세입결산액(b)	세출결산액(c)	잔액(b-c)
계	6,640,716,000	6,619,834,671	5,726,215,761	893,618,910
행정운영경비	1,209,952,000	1,189,952,000	1,002,120,613	187,831,387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1,539,089,000	1,541,201,000	1,324,754,230	216,446,770
장애인전문체육 육성	2,929,852,000	2,924,852,000	2,457,279,460	467,572,540
재무활동	961,823,000	963,829,671	942,061,458	21,768,213

○ 세출 자원별 반납액

(단위 : 원)

총 반납액	기금 반납금	도비 반납금 등	모금회 이월액	자부담 이월액
893,618,910	62,930,021	543,506,548	25,000,000	262,182,341

○ 퇴직금 예치 현황

(단위: 원)

구분	예치기관	종류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퇴직금	농협	퇴직연금(DB형)	090-0001-6478-61	261,480,436	2010.12.29.~
		퇴직연금(DC형)	090-0099-4974-11	185,640,970	2020.05.11.~

4 주요 처분 사항

○ 총괄

행 정 상(건)				재 정 상(천원)				신 분 상(명)		
계	시정	주의	기타	계	추징	회수	기타	계	징계	주의
6	1	5	-	-	-	-	-	-	-	-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제 목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1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적정	주의	-	-
2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
3	○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주의	-	-
4	○ 세입 및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주의	-	-
5	○ 통합체육교실 운영 강의수당 집행 부적정	주의	-	-
6	○ 물품검수조서 미작성	시정	-	-

첫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적정(주의)

○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 제33조 및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맞춤형복지제도 비용 지급 및 회계처리는 영수증에 의하여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는 연초('21.1.22.)에 사무처 직원의 각자 개인계좌로 '21년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후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둘째,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그런데도,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22년 6월 24일 전국시도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 방문직원 격려품(김) 550천원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주된 상대방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음.
- 또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급 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지급관리대장을 작성 첨부하지 않았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격려 주체인 사무처장에게도 농촌사랑상품권(5만원)을 2회에 걸쳐 (설, 추석) 지급하였음.

셋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행사운영비는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강사료, 행사 공무원 식비 등)를 집행하는 경비로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사실비 지원금은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급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지급(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일비지급 불가)하거나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충남장애인체육회는 행사운영비에서 기념품 및 선수단 격려물품 구입, 숙박비, 감독·코치 강화훈련 수당 등 30건 23,773천원을 지출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우수선수·팀 강화훈련비 10건 249,700천원을 집행하였음.

넷째, 세입 및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 미편성(주의)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21년 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를 도에서 1회 추경에 [233,856천원(기금116,928, 도비116,928) / 증2,112천원] 편성하여 예산 지원 되었음에도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예산을 1회추경에 증액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231,744천원) 상태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다섯째, 통합체육교실 운영 강의수당 집행 부적정(주의)

- 통합체육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강의 기간, 장소, 강의운영 시간 등을 포함하여 지출품의를 한 다음에 사업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하여 실제 강의 여부를 확인하고 강의 결과보고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강의수당을 지출품의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나 사진만 첨부하여 지출하였음

여섯째, 물품검수조서 미작성(주의)

- 행안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검사)에 의거 검사를 완료한 후 동법 제22조(대가의 지급)에 의거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하나
-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백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의 건에 대하여는 관행적으로 물품검사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⑤ 조치 계획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회계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음

⇒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 및 회계 질서를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